

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21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채용 분야·인원 및 보수

분야	인원	근무지	업무 내용	연봉월액(원)
안전 검토	1명	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 (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 세종청사 7동)	행정심판 안전 검토, 사건정리 및 위원회 안전상정·상담 등	2,225,000 * 시간외근무 수당 별도지급

2 근무 조건

가. 신 분

- 기간제근로자 :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
나. 계약 기간

- 2016. 7. 1. ~ 2016. 12. 31.(6개월)
※ 예산사정 등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 가능

다. 근무 형태

-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 근무

라. 후생 복지

-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3 응시 자격

가. 공통 응시 자격

- 1) 만18세 이상인 자(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)
- 2)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「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·운용 규정」 제10호 각호에 규정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
「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·운용규정」 제10조 각호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나. 안건검토 분야 응시자격

- 1) 법학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
- 2) 법학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법학분야 실무 경력자
- 3) 전문대학 법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취득 후 3년 이상 법학분야 실무 경력자

4 채용절차 및 일정

가. 채용 절차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시험

나. 채용 일정

원서 접수	서류심사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면접시험장소	최종합격자 발표
'16. 6. 21.(화) ~ '16. 6. 26.(일)	'16. 6. 27.(월) 14:00	'16. 6. 29.(수) (시간은 추후 공고)	국민권익위원회 (세종청사)	'16. 6. 30.(목) 10:00

※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일자 변경 시 별도 공고)

5 원서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 교부

-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(이력서·자기소개서 등 포함)

나. 원서 접수

- 접수 기간 : '16. 6. 21.(화) ~ '16. 6. 26.(일)
- 제출 방법 : 담당자 메일(mjh1172@korea.kr)로 온라인 제출

6 제출 서류

1) 응시원서(붙임1 서식) 1부

2) 이력서(붙임2 서식) 1부

※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·자격사항은 증빙 자료(경력증명서·자격증 사본 등) 첨부

※ 증빙 자료가 없는 경력·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음

3) 자기소개서(붙임3 서식) 1부

4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붙임4 서식) 1부

5) 최종학력 증명서(졸업증명서) 1부

※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《 제출 시 유의 사항 》

- ☞ 모든 서류들은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(원본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일 직접 제출)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☞ 제출 시 메일 제목을 '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(안전검토) 응시원서 제출(지원자 성명)' 로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하시기
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2) 허위사항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제출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3)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
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
발견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근로계약 체결 후
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
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4)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(별도 공고).
- 5)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
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
있습니다.
- 6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로(☎ 044-200-7181) 문의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붙임: 1. 응시원서(양식) 1부
2. 이력서(서식) 1부
3. 자기소개서(서식) 1부
4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서식) 1부. 끝.